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24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박홍배 · 민병덕 · 이광희
박상혁 · 김현정 · 서미화
박정현 · 홍기원 · 전진숙
조계원 · 윤준병 · 이정현
박지원 · 김태년 · 박 정
정태호 · 김준환 · 이정문
이수진 · 김남근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안전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안전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에게 충분한 안전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 발송과 이 조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공고는 각각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제3 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 발 송과 이 조 제1항에 따라 소집 통지를 갈음하는 공고는 각각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하여야 한다.</u>